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159
----------	-------

발의연월일 : 2025. 11. 12.

발 의 자 : 부승찬 · 백선희 · 백혜련
이재관 · 박선원 · 허성무
신정훈 · 김남근 · 이주희
김영배 · 허영의원
(11인)

제안이유

고부가가치, 기술집약, 최첨단 산업으로 손꼽히는 우주항공산업은 경제 발전과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최근 민간의 자본과 첨단기술 역량의 발전으로 민간 기업이 우주기술 혁신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음.

우주항공산업은 아직은 유치(幼稚)산업으로서 향후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우주손해배상법」 제6조 및 「우주개발진흥법」 제11조), 우주항공사업 수행 및 수출에 필요한 보증, 시설·재해·책임 등에 관한 위험이나 사고 대비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산업에 특화된 공제조합의 부재로 우주항공산업체들은 높은 보증·보험료를 지급하고 민간의 보증·보

험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또한, 우리나라 인공위성 및 우주발사체 관련 민간 보험의 경우, 대부분 해외 재보험사로 출재되고 있어 국부유출 및 기술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그러나 우주항공산업 공제조합을 별도로 신설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구축, 전산 시스템 개발, 전문 인력 채용, 초기 운영비 등에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며, 공제조합이 신설되더라도 우주항공산업체의 수가 많지 않고 대상 사업도 한정되어 있어 보증료 및 공제료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한편,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은 기술적·산업적 연관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다수의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동일한 기술·설비를 활용하여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 양 부문에 걸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방위산업공제조합이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보증·공제 상품을 제공하게 되면 공제조합 신설에 따른 초기 구축 비용 및 고정 운영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국부유출 및 기술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 산업 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우주사업자(이하 “우주항공사업자”라 함)를

포함시키고,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우주항공사업 관련 보증 및 공제사업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주적 우주산업 육성을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한편 방위산업 생태계의 유지·확장을 통해 방위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우주항공사업자를 추가함(안 제20조제3항제3호 신설).
- 나.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사업 범위에 우주항공사업에 관련된 보증, 공제사업, 자금의 융자 및 기자금 등의 구매알선을 추가함(안 제2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우주사업자(이하 “우주항공사업자”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8호 중 “방위사업”을 각각 “방위사업 및 우주항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로 한다.

5의2. 조합원인 우주항공사업자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우주항공사업 수행 및 수출에 필요한 보증
- 나. 우주항공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조·생산·연구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공제사업
- 다. 우주항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 라. 우주항공사업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 마. 우주항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기차재 등의 구

매알선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은 공 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 2. (생 략) <u><신 설></u> ④ ~ ⑥ (생 략) 제21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 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5. (생 략) <u><신 설></u>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u>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 법</u> 」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u>항공우주산업사업자</u> 및 「 <u>우 주개발 진흥법</u> 」 제2조제7호 에 따른 우주사업자(이하 “ <u>우 주항공사업자</u> ”라 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 -----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u>조합원인 우주항공사업 자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u> <u>가. 우주항공사업 수행 및 수출에 필요한 보증</u>

	<u>나. 우주항공사업 수행에 필</u> <u>요한 제조·생산·연구시</u> <u>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공</u> <u>제사업</u> <u>다. 우주항공사업을 수행하</u> <u>기 위하여 고용한 자의</u> <u>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u> <u>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u> <u>공제사업</u> <u>라. 우주항공사업 수행에 따</u> <u>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u> <u>하는 공제사업</u> <u>마. 우주항공사업 수행에 필</u> <u>요한 자금의 융자 및 기</u> <u>자재 등의 구매알선</u>
6. <u>방위사업과 관련한 연구 및</u> 교육	6. <u>방위사업 및 우주항공사업-</u> ---
7. (생략)	7. (현행과 같음)
8. 조합원이 수행하는 <u>방위사</u> 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8. ----- <u>방위사</u> <u>업 및 우주항공사업</u> --
9. ~ 12. (생략)	9. ~ 12.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u> 에서 규정하는 공제조합의 사 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93조는 제외한다) 및 「여 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하지	② <u>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u> <u>및 제5호의2</u> ----- ----- ----- -----

아니한다.

-----.